3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☑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☑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☑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 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 - 지역의 빈곤·소외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 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혼합형	☑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% 이상일 것
기타 (창의·혁신)형	☑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적의 실현여부를 판단

취약계층이란

- 저소득자
- 고령자
- 장애인
- 성매매피해자
-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
- 북한이탈주민
- 가정폭력 피해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
- 결혼이민자
- 갱생보호 대상자
- 범죄구조피해자
- 기타(1년 이상 장기실업자, 보호관찰청소년, 보호종료아동,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, 노숙인, 약물·알콜·도박중독자, 여성가장, 난민 등)

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

-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학교폭력피해자, 학교밖청소년,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

사회서비스란

- 교육
- 보육
- 보건
- 사회복지
- 환경
- 문화예술, 관광 및 운동서비스
-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
-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
- 간병 및 개인서비스
- 가사지원
- 산림보전 및 관리
- 기타